

신청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베트남의 기술이전법상 주요 내용

이준표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객원연구원, 법학박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기술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선 전략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기반성장' 개념을 도입하고,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기술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 이로 인하여,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도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베트남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법률에는 「과학기술법(Law on Science and Technology)」과 「기술이전법(Law on Technology Transfer)」이 있다. 이 법률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동안 다양한 세부 시행령 및 과학기술 발전 프로그램이 공포되어 왔다.²⁾

특별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베트남 「기술이전법」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이전³⁾에 적용되는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⁴⁾ 2006년에 베트남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은 2017년 6월 19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 「기술이전법(Law No. 07/2017/QH14 on Technology Transfer)」은 구 「기술이전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기술이전 관련 국가의 정책 수립, 기술이전 장려·제한·금지 목록 지정, 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지원체계 마련,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상업화 추진 등 다양한 부분에 걸친 현실적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며 대폭 개정되었다.

1 Tran Thi Bich Ngoc, "Vietnamese Enterprises: Current Issues of Technology Transfer",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Vol. 290), Atlantis Press, 2018, p. 509.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 "베트남 투자뉴스(제596호)", 2018. 4. 9., 2면.

3 베트남법상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기술이전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자에게 해당 기술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기술이전법」 제2조 7호).

4 개정 「기술이전법」 제1조.

신남방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 베트남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기술이전법」에 대한 이해와 입법 동향에 대한 파악은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베트남 현행 개정 「기술이전법」의 입법 배경 및 체계를 간단히 개관한 후, 개정 「기술이전법」의 주요내용을 ① 장려기술이전, 제한기술이전, 금지기술이전, ② 기술이전계약, ③ 기술이전 등록 절차, ④ 기술이전승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결론에서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II. 베트남 「기술이전법」의 입법 배경 및 체계

1. 입법 배경

베트남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된 이래, 베트남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국내 이전 및 도입 촉진에 기여하면서 베트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의 사회·경제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해 감에 따라 법 또한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베트남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the 2011-2020)’에서 기술혁신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하며 신기술을 수입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1-2020 과학기술개발전략(Strategy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2011-2020)’에서는 기술이전서비스 조직 및 기계·장치 시장의 발전과 지식재산권법의 집행담보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2011년 7월 5일에는 ‘2011-2015 과학기술 관련 목표와 과제 등을 승인한 총리결정(Decision No.1244/QD-TTg dated July 25, 2011 of the Prime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베트남과 신남방 과학기술협력 본격화”, 2018. 3. 22,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d7a889ab722036438a039aecdc6cd84e&rs=/SYNAP/sn3hcv/result/202001/\(2020.1.31.방문\)](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d7a889ab722036438a039aecdc6cd84e&rs=/SYNAP/sn3hcv/result/202001/(2020.1.31.방문)).

Minister approving maj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rientations, objectives and tasks during 2011–2015)’이 공포되었는데, 이 결정에서는 기술이전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원하며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 이용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전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⁶⁾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6년 베트남 국회는 구 「기술이전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담당부처인 과학기술부는 국내 조직이나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의 유사 법률들을 조사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베트남의 조건이나 국제적 역할 등에 적합한 초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종래에는 기술이전계약의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는데, 개정 「기술이전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계약,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기술이전계약,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기술이전계약 모두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술이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종래 기술이전계약을 베트남어(외국어 병기 가능)로만 작성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개정법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언어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게 하였다.⁷⁾

2. 체 계

개정 「기술이전법」은 총 6개 장, 6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① 기술을 이전하려는 자(기관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②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기술 평가, ③ 기술이전계약, ④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⑤ 기술이전의 국가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표-1 참조).

6 Pham Chi Trung, “Vietnam’s current legal system on technology transfer: problems and solutions”, Vietnam Law and Legal Forum Magazine, 2016. 7. 23, <http://vietnamlawmagazine.vn/vietnams-current-legal-system-on-technology-transfer-problems-and-solutions-5469.html> (2020. 1. 30. 방문).

7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2018년 주요 제·개정 법령 소개”, JIPYONG NEWSLETTER, 2017. 12. 15., 4면.

〈표-1〉 개정 「기술이전법」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제2장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평가 (제13조~제21조)
제3장 기술이전계약 (제22조~제34조)
제4장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촉진 조치
제1절 기술의 응용과 혁신의 촉진 (제35조~제40조)
제2절 과학기술 시장의 발전 (제41조~제44조)
제3절 기술이전서비스 (제45조~제48조)
제4절 농촌지역, 산악지역, 바다 섬 또는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 대한 기술이전 (제49조~제52조)
제5장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관리 (제53조~제58조)
제6장 이행규정 (제59조~제60조)

개정 「기술이전법」과 함께 시행된 개정 「기술이전법 시행령(Decree No. 76/2018/ND-CP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Technology Transfer 2017)」의 경우, 총 5개 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기술목록, 기술이전활동 관리, 제3장 기술이전 촉진·지원방안, 기술 응용·혁신과 과학 및 기술시장 발전, 제4장 기술평가·심사평가·감정조직의 심사, 절차, 순서, 활동조건, 제5장 실행조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4개의 부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부록 I은 이전장려기술목록, 부록 II는 이전제한기술목록, 부록 III은 이전금지기술목록, 부록 IV는 양식에 관한 내용이다 (〈표-2 참조〉).

〈표-2〉 개정 「기술이전법 시행령」 체계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기술목록, 기술이전활동 관리(제3조~제7조)
제3장 기술이전 촉진·지원방안, 기술 응용·혁신과 과학 및 기술시장 발전(제8조~제31조)
제4장 기술평가·심사평가·감정조직의 심사, 절차, 순서, 활동조건(제32조~제40조)
제5장 실행조직(제41조~제43조)
부록 I 이전장려기술목록
부록 II 이전제한기술목록
부록 III 이전금지기술목록
부록 IV 양식

III. 개정 「기술이전법」의 주요 내용

1. 장려기술이전, 제한기술이전, 금지기술이전

(1) 장려기술이전

개정 「기술이전법」은 기술이전이 장려되는 목록으로서 3가지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첨단기술 및 첨단기술을 동반한 기계·장치의 이전이 장려된다. 첨단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첨단기술법(Law No. 21/2008/QH12 on high technology 2008)」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선진기술⁸⁾, 신기술⁹⁾, 청정기술도 이전이 장려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개정 「기술이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¹⁰⁾

- ① 현재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현재의 제품보다 높은 품질이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 ② 국내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의 결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가적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 ③ 신제품 관련 새로운 서비스, 산업, 제조, 가공 등의 창설 및 검증된 신제품의 배양과 재배에 관한 기술
- ④ 베트남 국내의 현재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자원,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하는 기술
- 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높은 에너지 축적에 기여하는 기술
- ⑥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계·장치 제조 기술, 의료진단 및 치료, 인체건강 보호 및 베트남 국민의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및 장치, 의약품에 관한 기술
- ⑦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탐지, 대응 및 예측, 수색과 구조, 환경보호, 기후 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술

.....

8 베트남법상 '선진기술(Advanced technology)'이란, 베트남 내에서 같은 유형의 기존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적용된 것을 의미한다(개정 「기술이전법」 제2조 3호).

9 베트남법상 '신기술(New technology)'이란, 베트남이나 해외에서 최초로 발명되거나 적용된 기술로서, 베트남 내에서 같은 유형의 기존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기술이전법」 제2조 4호).

10 개정 「기술이전법」 제9조.

- ⑧ 높은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가진 동기생산시스템 기술
- ⑨ 국방, 안보, 공공 목적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⑩ 전통적인 거래와 직업을 개발하고 현대화하는 기술

셋째, 베트남 내에 존재하는 기능노하우, 기술노하우, 기술계획 및 프로세스, 기능 솔루션, 매개변수, 도면, 다이어그램, 공식,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정보, 생산최적화와 기술혁신 솔루션 등의 형태의 기술을 동반하는 기계·장치와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반제품 및 이러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 또한 해외로의 이전이 장려된다. 이전이 장려되는 특정대상 기술에 관한 구체적 목록은 개정 「기술이전법 시행령」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2) 제한기술이전

개정 「기술이전법」은 제한기술이전에 관하여,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이전,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이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첫째, 산업화된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지 않은 기술 및 이를 동반한 기계장비, 둘째, 국가기술표준이나 규제를 충족하는 독성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술, 셋째, 유전자 조환(組換) 제품을 제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 넷째, 국가기술표준이나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기술, 다섯째, 국내 개발이 규제되는 천연자원이나 광물을 사용하는 기술, 여섯째,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종자를 전파, 배양, 재배하기 위한 기술, 일곱째, 베트남 관습, 전통, 사회윤리 등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의 제조기술 등이 있다.¹¹⁾

또한 베트남에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첫째, 전통적인 제품의 제조, 전통 노하우에 따른 제조나 이용, 특수농업, 광업이나 베트남에서의 전형적인 희귀 원료의 유형화에 기여하는 기술, 둘째, 베트남의 핵심수출제품의 경쟁시장에 수출되는 제품에 기여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이전이 제한되는 특정 대상 기술에 관한 구체적 목록은 「기술이전법 시행령」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11 개정 「기술이전법」 제10조.

(3) 금지기술이전

개정 「기술이전법」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또는 국내에서의 기술이전이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산업 안전, 보건 및 사람의 건강, 천연 자원,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술, 둘째, 사회경제적 발전을 해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국방, 안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 셋째,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이용되지도 않고 이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가기술표준과 규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기술을 동반한 기계·장치 기술, 넷째, 환경 관련 국가기술표준과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술, 다섯째, 국가기술표준과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기술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기밀목록에 규정된 기술의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이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금지된다.¹²⁾

2. 기술이전계약

(1) 기술이전계약의 조건

단독기술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은 당사자간 일반 계약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투자프로젝트, 프랜차이즈 합의, 지식재산권의 이전, 기계·장치의 매매와 관련된 기술이전은 계약이나 약관, 계약서의 부록 또는 투자프로젝트 신청 서류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¹³⁾

12 개정 「기술이전법」 제11조.

13 개정 「기술이전법」 제5조 제4항.

(2) 기술이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기술이전계약은 서면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서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서 모든 면과 부록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있는 경우)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이전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기술이전법」은 물론 「민법」, 「상법」,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⁴⁾

(3) 기술이전계약의 내용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¹⁵⁾

- ① 이전되는 기술의 명칭
- ② 이전되는 기술 개체, 해당 기술로 제조된 제품, 제품의 표준 및 기술상세
- ③ 기술소유권 또는 이용권 이전의 내용
- ④ 기술이전의 방법
- ⑤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⑥ 대가 및 지불방법
- ⑦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유효기간
- ⑧ 계약상 사용된 용어 정의
- ⑨ 기술이전계획, 일정 및 기술이전장소
- ⑩ 기술이전에 대한 보증
- ⑪ 계약위반에 대한 벌칙
- ⑫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 ⑬ 분쟁해결기관
- ⑭ 기타 당사들에 의해 합의된 내용

14 개정 「기술이전법」 제22조.

15 개정 「기술이전법」 제23조.

(4) 기술이전계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발생시기

기술이전계약의 유효기간 즉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이전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날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기술이전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이전계약은 기술이전 허가 시점을 계약의 효력발생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이전증명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술이전계약서를 수정 또는 보충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기술이전증명서가 새로 발행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¹⁶⁾

3. 기술이전 등록 절차

(1) 관할등록기관

투자프로젝트 형식에 의한 기술이전의 경우,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의 투자 정책의 대상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은 과학기술부가 관할등록기관이 되며, 지방기관, 산업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관리위원회 등의 투자정책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과 투자정책의 취득요건이 없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은 과학기술처가 관할등록기관이 된다.¹⁷⁾ 한편, 단독기술이전 등 기타 형식에 의한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과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이전의 관할등록기관은 과학기술부가 되며, 국가 자본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베트남 국내의 기술이전의 관할등록기관은 과학기술처가 된다. 다만, 국방 분야에 대한 국가기밀 관련 기술이전 또는 국방 목적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절차는 국방부가 관할한다(표-3 참조).

16 개정 「기술이전법」 제24조.

17 개정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6조.

〈표-3〉 기술이전 형식에 따른 관할등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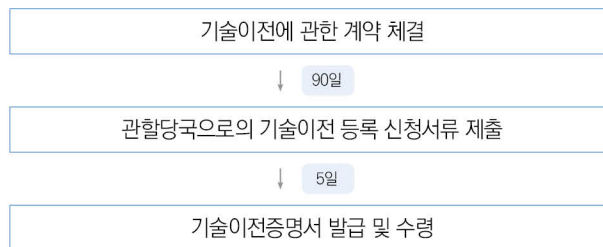
	과학기술부 ¹⁸⁾	과학기술처 ¹⁹⁾
투자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부 및 국가 기관의 투자 정책의 대상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관, 산업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관리위원회 등의 투자정책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 · 투자정책의 취득요건이 없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에 의한 기술이전
단독기술이전 등 기타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자본이나 예산을 사용하는 베트남 국내의 기술이전

출처: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6조 참조

(2) 등록절차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한 후, 90일 이내에 기술이전 등록 의무를 가진 당사자는 관할당국에 기술이전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²⁰⁾ 관할당국은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 후 기술이전 등록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이전되는 기술이 제한기술이전 목록에 해당되거나 기술이전계약서의 내용상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할당국에 의해 등록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표-4 참조).

〈표-4〉 기술이전 등록 절차



출처: 「기술이전법」 제31조를 참조하여 필자가 구성

18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중앙 정부 단위의 현역 지역 과학·기술 프로젝트 총괄 본부이다. 그 아래, 지방 정부 단위의 과학기술처(Depart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각 시, 성(province)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19 각 지역 과학기술처들은 기술 진흥을 위해 대부분 그 산하에 과학·기술 정보, 과학·기술 응용 전담 직속 기관을 두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이 두 역할을 직속 기관 1개가 관리하기도 한다. 일례로, 호찌민시 과학·기술처는 산하에 과학·기술정보 통계센터(Center for Statistics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of Hochiminh City)와 과학·기술 진보응용센터(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pplication of Hochiminh City)를 두고 있다.

20 개정 「기술이전법」 제31조.

(3) 기술이전 등록 신청서류

기술이전 등록 신청서류에는 기술이전등록 신청서와 기술이전계약서가 있다. 기술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기술이전법 시행령」에 부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내용 및 계약 내용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서에는 법에서 요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원본이나 공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베트남어 버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인증 또는 공증한 후 제출해야 한다.²¹⁾

4. 기술이전승인

(1) 관할당국

「기술이전법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제한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이전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관할당국의 기술이전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술이전승인 신청을 관할하는 곳은 과학기술부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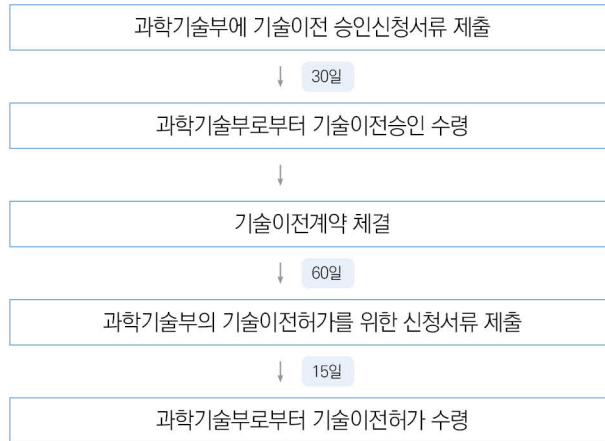
(2) 신청절차

제한기술이전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의 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먼저 관할당국인 과학기술부에 기술이전 승인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을 승인신청서류를 받은 30일 이내에 검토 후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이전승인을 수령한 자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의 기술이전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기술이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이전의 경우나 기술에 관한 의견이 투자 정책 결정단계 또는 투자 결정단계에서 이미 검증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표-5 참조).

21 개정 「기술이전법」 제31조 제3항.

22 개정 「기술이전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표-5〉 기술이전승인 절차



출처: 「기술이전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참조하여 필자가 구성

(3) 신청서류

기술이전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술이전 승인신청서
- ② 신청자의 법적자격에 관한 서류
- ③ 기술설명서
- ④ 이전된 기술의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서
- ⑤ 기술 표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적합성에 관한 설명서

기술이전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술이전 승인신청서 (당사자들에 의해 계약 내용이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선언 및 의무를 명기해야 함)
- ② 신청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서류
- ③ 기술이전계약서
- ④ 기술이전계약서에 첨부되는 기술, 기계, 장치 목록(있는 경우)
- ⑤ 지식재산권 보호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증서 공증사본(있는 경우)
- ⑥ 이전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성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 및 품질
- ⑦ 기술의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서
- ⑧ 기술이전료 지불에 있어서 국가자산이 사용되는 경우, 기술이전료 평가서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인 기술개혁을 통해 현지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 및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국가발전계획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²³⁾ 법제도적으로는 2006년 제정했던 「기술이전법」 및 「기술이전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는 등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률 개정과 동시에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기술이전법」의 이행가능성 및 이 부문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매우 높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베트남 기업 내에서의 기술 혁신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 에너지, 교통, 정보 등 각 분야의 기술이전 관리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술개혁에 대한 베트남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현지 기업 대부분이 중소 또는 그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거나 미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지 기업은 기술이나 장비 수입에

23 KOTRA, “베트남 투자뉴스(제596호)”, 2018. 4. 9., 6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²⁴⁾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8%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자금 한계 때문에 기술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낙후되지 않는 기술과 기계장치를 들여오다 하더라도 베트남 노동자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급인력 육성은 이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도 주요 목표로 상정되어 있었고,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향상을 위해 숙련인력을 70%, 직업훈련 55% 등으로 계획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²⁵⁾ 첨단기술을 이해하려면 첨단실력을 갖춘 노동자나 고학력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즉, 베트남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인력개발 및 양성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 베트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법률 규정의 정비와 개선작업과 함께 근본적인 법 인식의 전환 즉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24 KOTRA, “베트남 투자뉴스(제596호)”, 2018. 4. 9., 6면.

25 육수현, “모던 베트남(Modern Vietnam)을 위한 한국의 역할: 기술이전과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Vol.2 No.4), 2019. 12.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베트남과 신남방 과학기술협력 본격화”, 2018. 3. 22.
-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2018년 주요 제·개정 법령 소개”, JIPYONG NEWSLETTER, 2017. 12. 15.
- 육수현, “모던 베트남(Modern Vietnam)을 위한 한국의 역할: 기술이전과 인력개발을 중심으로”,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Vol.2 No.4), 2019. 12.
- KOTRA, “KOTRA, 베트남 투자뉴스(제596호)”, 2018. 4. 9.
- Pham Chi Trung, “Vietnam’s current legal system on technology transfer: problems and solutions”, Vietnam Law and Legal Forum Magazine, 2016. 7. 23.
- Tran Thi Bich Ngoc, “Vietnamese Enterprises: Current Issues of Technology Transfer”,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Vol. 290), Atlantis Press, 2018.